

[종신연금보험 약관]

【조【보험의 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이 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생존급부금, 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전 계약이 유효하게 경과하고 계약 일로부터 매5년마다 계약당일에 살아있을 때 때;
2.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매년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3. 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를명한 경우로서 실종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4. 보험료 납입기간 안에 별표 3에 정한 1급, 2급 또는 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2 조【회사의 책임기간】 ①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 측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였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상 경과하였을 때;
- (3)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총액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4 조【보험료의 납입】 ①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계약의 납입방법과 징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소정의 염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보험계약자가 보험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과 징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5 조【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2)회사는 계약자에게 유예기간 만료 10일전에 계약의 실효율 예고하고 그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6 조【계약의 부활】 ①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사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

면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외에 대하여 회사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은 부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 7 조【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전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2)회사는 제 1 항제 1 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망보험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계약의 무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피보험자로 한 경우;

3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제 1 항제 1 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은 서면통지 또는 보험증권의 배서의 방법에 의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료의 납입기간
3. 계약보험금액의 감액
4. 계약자 또는 수의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 (2)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3 호의 계약보험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 중 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보험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4)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5)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그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하는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후의 보험금액이 회사가 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의 청구】

수의자는 제 1 조에 정한 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지정한 지급기일을 경과 하울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생존급부금, 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2조【환급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이 연금지급 개시 전에 해지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제 3 조 제 2 항, 제 5 조제 2 항, 제 7 조제 1 항제 2 호, 제 9 조제 2 항 및 제 4 항)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 일이내에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금(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1. 회사소정의 환급금 청구서
2.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3. 보험증권
4. 기타 계약자가 환급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이 납입기간중 해약될 때에는 해약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 의한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제11조제 2 항

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 사업연도말 발생한 이익잉여금중에서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적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하고 이익배당금은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하여 드립니다.

제16조【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청구권의 시효】 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청구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제19조【계약자의 주소 변경통지】 ① 계약자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소정의 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의 경우)
 3. 상해진단서(상해의 경우)
 4. 피보험자의 호적초본(생존급부금 및 연금의 경우)
 5. 보험증권
 6. 수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7. 기타 수의자가 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1조【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 일 이내에 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생존급부금,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의요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3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의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그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의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의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5조【계약자에 대한 배당】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정

② 제 1 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주소로 발송한 통지가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증권의 재교부등】 회사는 계약에 대하여 두루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21조【연령의 계산 및 학오의 처리】 연령의 계산 및 학오의 처리는 이보협의 사업방법서에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 표

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 계약이 유효하게 경과하고 계약일로부터 매 5년마다 계약용당일에 살아있을 때:
 - 가. 계약일로부터 매 5년마다 계약용당일에 계약보험금액의 10%를 생존급부금으로 연금지급 개시일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 나. 연금지급개시일까지 기간중 5년미만의 단수 기

이 있은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단수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생존금부금을 연금지급개시일
에 연금에 가산 지급합니다.

$$\text{단수 기간.년수} \times \text{계약보험금액의 } 10\%$$

2.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용당일에
살아있을 때 : 계약보험금액의 10%를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매 5년마다 계약보험금액의 5%씩 증액하여 매
년 계약용당일에 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
 - 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
 - 1) 피보험자가 불의의사고(별표 2 참조)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하였을 때 : 기납입 보험료 전액
 - 2) 피보험자가 불의의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 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연금지급개시
일 이전 사망시 :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 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 사망시 :

계약보험금액의 125%에서 [기자급연금액]을 차감

〈분류 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 사고.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4. 기타 도로 교통 기관 사고.
5. 수상교통 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 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9.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나.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 다. 세균성 식중독(포도상구균성 *Bacillus*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 이거나
대장염.
 - 라. 알레르기성 시기성
10.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폐질.
11. 법적 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2. 전쟁행위에 의한 폐질.
13.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한시 간호를 요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 신토록 한시 간호를 요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 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 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한 다리의 발 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기자급연금액이 계약보험금액의 125%를 초과
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1급, 2급 또는 3
급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후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 2

〈対象이 되는 不意의 事故〉

우발적 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
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
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분류 표에
따른사고를 말한다.

9. 가스 및 연기애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파도의 고온.
 - 나. 고압 및 저압.
 - 다. 여행 및 신체요동에 의한 장해.
 - 라. 기아, 갑,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갑.
 13. 기타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파도 및 격동증의 파도.
 - 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해 또는 정신
신경장해 상태가 있는자의 음식물 흡입, 또
는 연하에의한 폐색 및 질식.
 - 다.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질병의 진단 목적.
 - 나. 질병의 치료목적.

2 급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9.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 지 못하게 된 때
3 급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까지증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또한 다른 한팔이나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4 까지증 또는 제4급의 1부터 5까지증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하지 못하게 된 때
9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 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 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 구하 남겼을 때
4 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시지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 락을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 를 포함하여 3손가 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별표 4)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1월 35세 체액보험금액 100만원, 월남기준)

경과년월수	5년 납		10년 납		전기 납	
	기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기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 월	7,700	0	4,950	0	38,800	0
6 개 월	46,200	14,410	29,700	0	22,800	0
1 년	92,400	53,830	59,400	23,450	45,600	11,780
3 년	277,200	236,870	178,200	134,920	136,800	95,390
5 년	462,000	462,030	297,000	270,590	228,000	195,700
7 년	462,000	440,590	415,800	313,420	319,200	193,670
10 년	462,000	597,800	594,000	597,800	456,000	386,830
15 년	462,000	837,920	694,000	837,920	684,000	701,980

11

재 해 상 해 특 약

제 1 조【특약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별표 1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상해금부금을 드립니다.

상해동급별 약정금부금표

상 해 금 수	상 해 금 부 금
2 급	계약보험금액의 70%
3 급	" 50%
4 급	" 30%
5 급	" 15%
6 급	" 10%

② 제 1 항에 의하여 특약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종목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만을 드립

니다.

③ 제 2 항에 규정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상해가 이미 상해금부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상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금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금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④ 제 2 항에 있어서 그 불의의 사고전에 이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 3 항에 규정하는 상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미 상해금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3 항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상해로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2. 제 1 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금

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상해 또는 상해금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상해.

⑤ 상해로 인한 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액의 70%로 합니다.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3 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4 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

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 조【특약의 실효】 ①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6 조【특약의 부활】 ① 이 회사는 특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특약의 소멸】 ① 제 1 조 제 1 항의 경우 상해금부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의 70%에 달하면 제 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자동 소멸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상해금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해금부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상해금부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상해금부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의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시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상해금부금의 청구】 수의자는 제 1 조에 정한 상해금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상해금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소정의 상해금부금 청구서

2. 상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수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5. 기타 수의자가 상해금부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1 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 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②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10. 살모네라성 (*Salmonella* 성) 식중독.
11. 세균성식중독(포도상구균성 *Botulimus* 성).
12.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13.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

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립원검도록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해 또는 정신신경 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을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목적.
 - ②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14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1 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2) 상해 등급 분류 표

상해급수	신체 장해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4 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1 부터 5 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1.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자 및 시지를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자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자 및 시지중 적어도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자 및 시지를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15

제 5 급	1. 한손의 모자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자 및 시지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자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걸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손의 모자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자 및 시지이외의 2 손가락 또는 3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손의 모자 및 시지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주기)

1. "종신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징후"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어금니상 기능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의 적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 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으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이상 (귀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삼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현저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1급의 5, 6, 7 또는 8 제2급의 1, 2, 3 제3급의 5 또는 제4급의 6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나. “척추의 현저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 하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 지질간 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말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모지는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해사망특약]

제 1조【특약의 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별표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계약보험금액의 전액을 드립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제 2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이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로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4조【특약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

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조【특약의 효력】 ①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 6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할 때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 7조【특약의 소멸】 ① 제 1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시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자동소멸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살행위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의금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종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수의자는 제1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소정의 보험금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의 경우)
3. 상해진단서(폐질의 경우)
4. 보험증권
5. 수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6.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주계약의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

- (1) 외상의 또는 악습습속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임 등
- (2)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 (C)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
 - ② 살모내라성(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식중독(포도상 구균성 Botulinus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식중독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 10. 불의의 추락
 -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 (C) 기타 불의의 사고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 표〉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사고
5. 수상 교통기관사고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해 또는 정신 신경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 ②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폐질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1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주기〉

1. "중신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라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어음구성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라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덧벌로 했을 때 $\frac{1}{6}$ ($a+2b+2c+d$)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5. 코 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짐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frac{1}{2}$ 이상의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원전 운동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원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현저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현저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굽하기 및 좌우굽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의 $\frac{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 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질의 $\frac{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 등급표중 제 1급의 5, 6, 7 또는 8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 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